투자위험등급 :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B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48292)

2.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3. **판 매 회 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4. **작 성 기 준 일:** 2023년 09월 1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3년 10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2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 자산운용

[목 차]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 [펀드코드: 48292]

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B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단기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장부가로 기준가격을 산정하므로 이에 따른 시가와의 괴리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법인용 단기금융투자신탁(MMF)로서 철저한 거시경제 분석 및 채권시장 전망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중평균 만기를 관리하고, 우량채권 및 유동성자산을 적절히 편입하여 단기 금융상품으로서의 수익성과 유동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0.120	0.060	0.160	0.120	12	25	39	68	155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해당 집합투자기구는 A 클래스가 없어, 투자시 C 클래스와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2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2/03/29 ~ 2023/03/28	2021/03/29 ~ 2023/03/28	2020/03/29 ~ 2023/03/28	2018/03/29 ~ 2023/03/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05-03-29	2.74	1.79	1.43	1.50	2.56
비교지수	2005-03-29	2.62	1.71	1.32	1.41	2.43
수익률 변동성	2005-03-29	0.12	0.16	0.15	0.12	0.17

(주1)비교지수: KBAM유동지수(콜론)*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				운용경력년수
			펀드수 (개)	규모 (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보은	1989년	책임	6	144,359	3.83	5.53	3.83	5.53	8년 7개월
강진원	1972년	부책임	48	167,784	3.83	5.53			20년 3개월
장여선	1990년	부책임	15	134,432	3.83	5.53			7년 1개월
양은아	1992년	부책임	12	145,468	3.83	5.53			6년 3개월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table>
<tr><td></td><td>(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td></tr>
<tr><td>투자자
유의사항</td><td>·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MMF 펀드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주요
투자위험</td><td colspan="2"><table>
<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원본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tr>
<tr><td>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td><td>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변동위험</td><td>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ABS 또는 ABCP 등과 같은 유동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의 원금 상환 재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부동산 PF 대출채권, 예금, 매출채권, 모기지론 등)의 회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나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기초자산이 부실화되거나, 유동화전문회사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경우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을 수 있어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td></tr>
<tr><td>매입방법</td><td colspan="2">17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td><td>환매방법</td><td>17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2영업일에 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3영업일에 대금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td><td>산정방법</td><td colspan="3">-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td><td>공시장소</td><td colspan="3">판매회사 본 ·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td></tr>
<tr><td>과세</td><td>구분</td><td colspan="3">과세의 주요내용</td></tr>
<tr><td></td><td>집합투자기구</td><td colspan="3">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td><td>수익자</td><td colspan="3">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계좌 · 클래스 · 펀드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table>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KB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67-82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kbam.co.kr)</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 매출 총액</td><td>20조 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3년 10월 18일</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30~3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9">집합투자기구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td></tr>
<tr><td colspan="2">종류(Class)</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td></tr>
<tr><td>판매수수료</td><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직판(직판)</td><td>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통해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일정금액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r><td rowspan="4">기타</td><td>고액(I)</td><td>일정금액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r><td>기관(F)</td><td>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이나,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td></tr>
<tr><td>랩,금전신탁(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퇴직)</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td></tr>
</table>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별첨 1]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한 경우]

1)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 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 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 주식 매도자금 및 일반 투자신탁 환매자금이 MMF 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약정(또는 예약)되어 있는 경우 MMF에 납입된 자금은 당일 설정 가능
- 주식 매수자금 및 일반펀드 매입자금이 MMF 계좌로부터 자동 출금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제일에 MMF 당일 환매 가능

※ 약정(또는 예약): 결제일 전일 오후 5시 이전에 약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2)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오후 5시 이전에 배치작업(자동이체)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일 설정 및 환매 가능(각 판매회사별로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 투자신탁의 매도와 관련하여 MMF 계좌의 입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당일 매입 가능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 투자신탁의 매수와 관련하여 MMF 계좌의 출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출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환매 가능
- CMA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익일 자동상환(CMA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사전약정 거래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전약정에 의한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대출상환일에 MMF 당일환매 가능
- 공모주 등의 청약·환불 자금과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MMF 계좌의 입·출금 약정이 있는 경우

주) 위의 1)과 2)에 해당하는 업무는 판매회사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3) 판매회사가 고유자금으로 일정한도(MMF별 판매규모의 5%와 100억 중 큰 금액) 내에서 MMF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하여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일 매입·환매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

나. 종류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R663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AR669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BB852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2940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2941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A778
C-직판	수수료미징구-직판	DS48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단기금융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투자신탁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20조좌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금액이 예정금액 미달시에는 그 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투자신탁이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모집장소: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

나. 종류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R663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AR669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BB852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2940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2941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A778
C-직판	수수료미징구-직판	DS48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 짜	주 요 내 용
2005.03.29	최초설정
2005.06.07	Late Trading 시행으로 인한 변경
2005.10.24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에 의한 변경
2005.11.21	익일환매 시행에 따른 변경
2006.07.01	익일매입 시행에 따른 변경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 투자신탁명칭을 'KB 국공채 MMF투자신탁(법인용) I-2호에서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로 변경
2009.10.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2010.03.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
2010.06.0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강진원 → 한철진)
2012.06.18	보수인하
2013.04.01	채권평가회사 추가(에프앤자산평가)
2013.11.2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한철진 → 강진원)
2013.11.29	보수인하
2014.04.11	보수인하, 종류형으로 변경
2016.03.11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추가
2016.07.02	위험등급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변경, 위험등급 변경(5등급 → 6등급)
2018.01.22	C-퇴직/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추가
2018.04.06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고성수)
2018.06.05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추가
2019.03.06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고성수 → 양은아)
2019.05.23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양은아 → 이호종/양은아)
2019.09.04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및 한글 클래스 명칭 부기 반영
2021.04.29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2021.06.1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호종/양은아 → 정상우/양은아)

2022.03.08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추가
2022.05.3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2022.07.1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정상우/양은아 → 이보은/양은아)
2023.02.17	설정 총 좌수 변경(10조좌 → 20조좌)
2023.03.3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보은/양은아 → 이보은/장여선/양은아), 안정자산비중문구 추가
2023.10.1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강진원 → 이보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보은/장여선/양은아 → 강진원/장여선/양은아)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 상 정해진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2-2167-8200)

※ 자세한 내용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23년 09월 18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				운용경력년수
			펀드수 (개)	규모 (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보은	1989년	책임	6	144,359	3.83	5.53	3.83	5.53	8년 7개월
강진원	1972년	부책임	48	167,784	3.83	5.53			20년 3개월
장여선	1990년	부책임	15	134,432	3.83	5.53			7년 1개월
양은아	1992년	부책임	12	145,468	3.83	5.53			6년 3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성명	주요 운용경력
이보은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8년 7개월	강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1년 3개월 KIS채권평가 선임연구원 2년 7개월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7년 5개월 한국증권금융 자산운용부문 3년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9년 10개월
장여선	미래에셋자산운용 헤지펀드운용팀 9개월 알파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2년 1개월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4년 3개월	양은아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6년 3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가 약정된 투자신탁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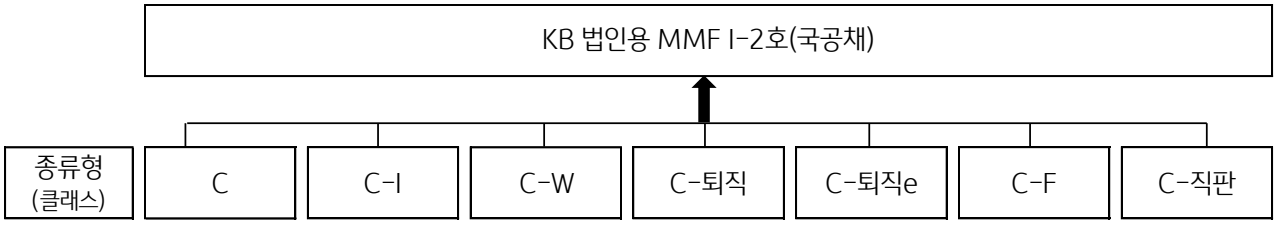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2023년 09월 18일 기준)

성 명	운 용 기 간	비 고
강 진 원	2013.11.21~2023.10.17	채권운용본부
이 보 은	2023.10.18~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단기금융,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클래스)		투자신탁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판(직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통해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일정금액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기타	고액(I)	일정금액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랩,금전신탁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퇴직연금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이나,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연, %)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제한없음	-	-	-	0.060	0.040	0.010	0.010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0.040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0.000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퇴직연금용				0.050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온라인 가입 퇴직연금용				0.025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0.010			
C-직판	수수료미징구-직판	직판가입자				0.00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인용 단기금융투자신탁(MMF)**로서 잔존 만기기간이 짧은 국공채 및 유동성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 내역
①	채무증권 (채권, 기업어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중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하 “국공채”이라 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②	채무증권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것(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③	양도성 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
④	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의 예치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

		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⑤	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⑥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⑦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⑧	단기사채 등	

나. 투자제한

(1)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

1) 집합투자업자가 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나)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다)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2항 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운용상의 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ⅰ)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ⅱ)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ⅰ)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ⅱ)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 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ⅰ) 채무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서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함]

ⅱ) 어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로 한다)

ⅲ)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로 함). 이 경우 가 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ⅰ)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a. 만기 30일 이내일 것

b.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c.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ⅲ)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

(라)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바) 이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사) 이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ⅰ) 자산의 원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ⅱ) 위의 가 목과 같이 원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아) 다른 단기금융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자)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채무증권(환매조건부채권에의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현금

(나) 국채증권
(다) 통화안정증권
(라)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ⅰ) 양도성예금증서·정기예금
ⅱ)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 제4호 나 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ⅲ)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마) 환매조건부매수
(바) 단기대출
(사)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3)의 (가)~(다)에 해당하는 것
(나)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3)의 (라)에 해당하는 것
(다) 3)의 (마)~(사)에 해당하는 것

5)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안정적 자산 비중” 이라 한다)이 30%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현금
(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다) 양도성 예금증서
(라)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다 목 및 바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마)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바) 1)의 (다)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1)의 (다) ⅱ) b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KBAM유동지수(콜론)을 비교지수로 하여, 철저한 거시경제 분석 및 채권시장 전망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중평균 만기를 관리하고, 국공채 및 유동성자산을 적절히 편입하여 단기 금융상품으로서의 수익성과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 비교지수: KBAM유동지수(콜론)
▪ **KBAM유동지수(콜론):** KBAM유동지수(콜론)이란 채권평가회사에서 콜론운용자금의 동향을 종합하여 생성한 시장지수 데이터를 제공받아 KB자산운용㈜에서 자체 생성한 콜론을 지수화 한 것임 ▪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은 단기자금 운용을 위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생성해 이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음

※ 비교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임

※ 콜론: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론"이라 부르며, 이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 합니다.

(2) 위험 관리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가)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나)상품유형별, 펀드별 운용자산 만기분포 분석

(다)특정업종 및 종목의 집중편입여부 점검 및 통제

(라)보유 종목의 시장 유동성 모니터링 등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잔존기간이 짧은 국공채 및 유동성자산에 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ABS 또는 ABCP 등과 같은 유동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의 원금 상환 재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부동산 PF 대출채권, 예금, 매출채권, 모기지론 등)의 회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나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기초자산이 부실화되거나, 유동화전문회사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경우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을 수 있어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 해산의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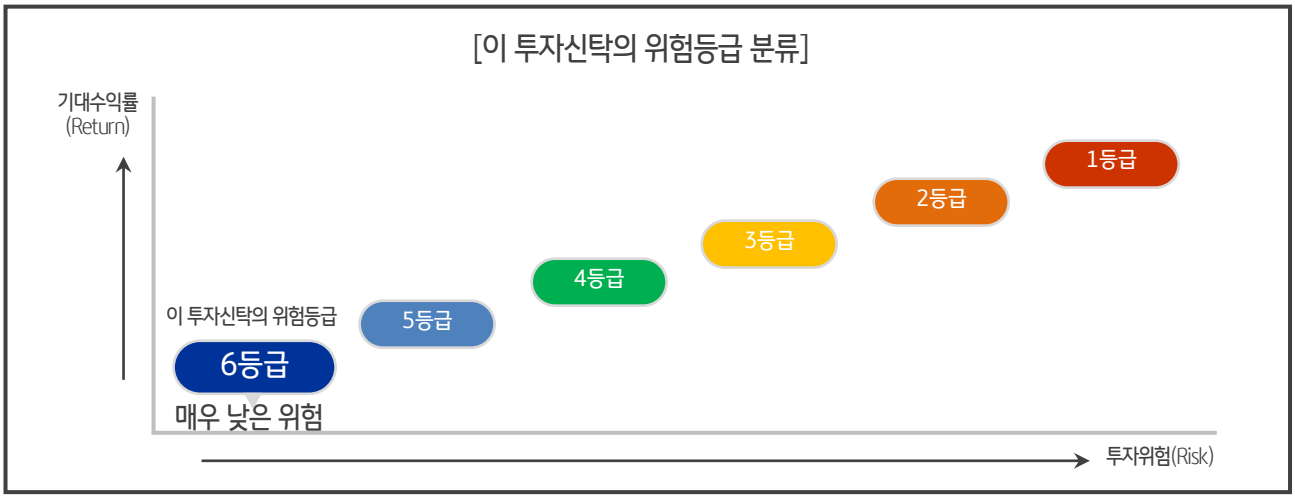
(1) 이 투자신탁은 연환산 표준편차(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 기준)가 **0.15%**로 **6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고 단기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KB자산운용㈜는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 표준편차: 펀드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한 값으로써 수익률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임.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며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집합투자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3)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함)

1)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의 다음 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T)	제2영업일(T+1)	제3영업일(T+2)
17시(오후 5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집합투자증권 매입시 자금을 납입한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일 종가로 계산)으로 집합투자증권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별첨1'에서 정한 경우에는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 종가로 계산)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4) 종류별 가입 요건

종류(클래스)		가입자격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50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C-직판	수수료미징구-직판	집합투자업자를 통해 500억원 이상 직접 가입하는 법인투자자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2영업일(T+1)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T+1)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3영업일(T+2)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T)	제2영업일(T+1)	제3영업일(T+2)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집합투자증권 환매시 환매신청일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일 종가로 계산)으로 집합투자증권 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별첨1'에서 정한 경우에는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 종가로 계산)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8)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를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1)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 비중(30%)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6) 5)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 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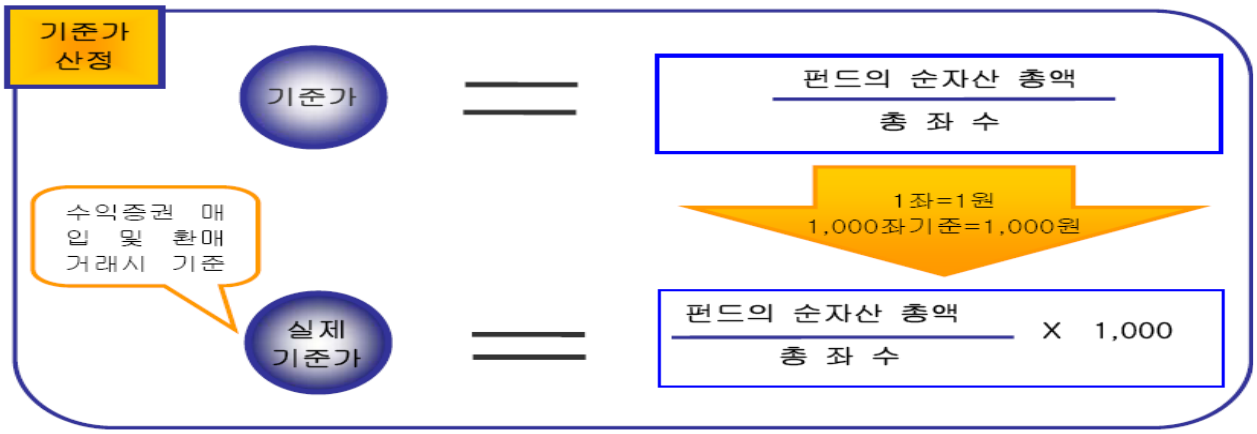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산구분	평가 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권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에는 법 제2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1) 신탁계약서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

2)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 · 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 시가 평가 방법

자산구분	평가기준
국내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국내 비상장채권 (CP, CD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는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운용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며, 해당 평가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클래스)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	-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	-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	-	-	-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	-
C-직판	수수료미징구-직판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투자신탁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증권 거래비용
C	0.040	0.060	0.010	0.010	0.120	0.000	0.120	0.160	0.004
C-I	0.040	0.040	0.010	0.010	0.100	0.004	0.104	-	0.004
C-W	0.040	0.000	0.010	0.010	0.060	0.000	0.060	-	0.005
C-퇴직	0.040	0.050	0.010	0.010	0.110	0.000	0.110	-	0.005
C-퇴직e	0.040	0.025	0.010	0.010	0.085	0.000	0.085	-	0.005
C-F	0.040	0.010	0.010	0.010	0.070	0.000	0.070	-	0.005
C-직판	0.040	0.000	0.010	0.010	0.060	0.000	0.060	-	0.005
지급 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예시: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A 클래스가 없어, 투자시 C 클래스와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예시: 증권·선물·옵션 등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증권거래비용	225,485

※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금융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2. 투자신탁재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정보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건당 결제 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보관비용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타 부수비용(out 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해당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 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단위: 천원)

종류(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2	25	39	68	155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11	22	34	59	134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신탁	6	13	19	34	78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1	23	36	62	142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9	18	28	48	110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7	15	23	40	91
C-직판	수수료미징구-직판	6	13	19	34	78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율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12%(또는 15%) 세액공제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간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8기(2022.03.29~2023.03.28)	신한	적정
제17기(2021.03.29~2022.03.28)	신한	적정
제16기(2020.03.29~2021.03.28)	신한	적정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8기	제 17기	제 16기
	2023.03.28	2022.03.28	2021.03.28
운용자산	6,882,390,260,286	3,329,268,543,123	5,254,456,317,034
증권	5,415,690,700,727	2,393,687,311,361	4,314,560,035,64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466,699,559,559	935,581,231,762	939,896,281,39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2,870,066,701	10,801,789,147	9,379,778,673
자산총계	6,945,260,326,987	3,340,070,332,270	5,263,836,095,70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1,024,493,819	482,048,132	726,912,473
부채총계	11,024,493,819	482,048,132	726,912,473
원본	6,748,165,957,802	3,310,831,486,815	5,224,741,440,982
수익조정금	34,372,661,450	-10,211,540,401	6,122,129,678
이익잉여금	151,697,213,916	38,968,337,724	32,245,612,574
자본총계	6,934,235,833,168	3,339,588,284,138	5,263,109,183,234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8기	제 17기	제 16기
	(2022.03.29 ~ 2023.03.28)	(2021.03.29 ~ 2022.03.28)	(2020.03.29 ~ 2021.03.28)
운용수익	138,953,271,749	36,895,033,449	31,420,443,778
이자수익	136,442,974,308	36,927,691,844	31,878,729,257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510,297,441	-32,658,395	-458,285,479
기타수익	18,667,649,003	7,327,305,595	5,890,825,273
운용비용	4,857,814,018	4,611,139,008	4,444,351,202
관련회사 보수	4,632,329,447	4,310,158,692	4,109,070,996
매매수수료	225,484,571	300,980,316	335,280,206
기타비용	716,563,548	642,862,312	621,305,275
당기순이익	152,046,543,186	38,968,337,724	32,245,612,574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당기 매매회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 되었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매매회전율	동종유형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주식 평균금액(B)	(A/B)	평균 매매회전율
-	-	-	-	-	-	32.00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기준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8기	제17기	제16기
증권대여 수익			
증권차입 비용			

주3) 기타비용에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자산별 거래금액 및 거래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비율(B/A)		금액(B)	비율(B/A)
주식						
채권 등	26,499,957			5,378,245		
집합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합계	26,499,957			5,378,245		

※ 채권 등 : 주식 이외의 증권으로 채권, 어음, 파생결합증권 등을 포함

※ 주1)~주3)에 기재된 수치는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른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되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가.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3.29 ~ 2023.03.28	3,921	3,955	28,736	29,096	28,256	28,616	4,401	4,521
2021.03.29 ~ 2022.03.28	6,384	6,430	30,284	30,379	32,746	32,853	3,921	3,955
2020.03.29 ~ 2021.03.28	3,608	3,664	28,269	28,387	25,493	25,599	6,384	6,430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C-I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3.29 ~ 2023.03.28	28,407	28,654	348,495	353,279	314,162	318,595	62,740	64,471
2021.03.29 ~ 2022.03.28	45,350	45,684	278,840	279,769	295,783	296,805	28,407	28,654
2020.03.29 ~ 2021.03.28	25,923	26,329	285,915	287,050	266,488	267,572	45,350	45,684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다.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3.29 ~ 2023.03.28	60	60	20	21	45	46	35	36
2021.03.29 ~ 2022.03.28	110	111	75	75	125	125	60	60
2020.03.29 ~ 2021.03.28	67	68	262	263	219	220	110	111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라.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3.29 ~ 2023.03.28	232	234	475	480	510	516	197	203
2021.03.29 ~ 2022.03.28	185	186	377	379	330	331	232	234
2020.03.29 ~ 2021.03.28	50	51	433	435	298	300	185	186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마.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3.29 ~ 2023.03.28	449	453	5,611	5,680	5,999	6,075	61	62
2021.03.29 ~ 2022.03.28	194	196	995	1,000	741	743	449	453
2020.03.29 ~ 2021.03.28	74	75	1,897	1,904	1,776	1,785	194	196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바.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3.29 ~ 2023.03.28	39	39	2,365	2,396	2,356	2,388	48	49
2021.03.29 ~ 2022.03.28	25	25	836	839	822	825	39	39
2020.03.29 ~ 2021.03.28	34	34	1,261	1,267	1,270	1,277	25	25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사.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3.29 ~ 2023.03.28	0	0	3,391	3,400	3,391	3,403	0	0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운용실적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준일: 2023년 03월 29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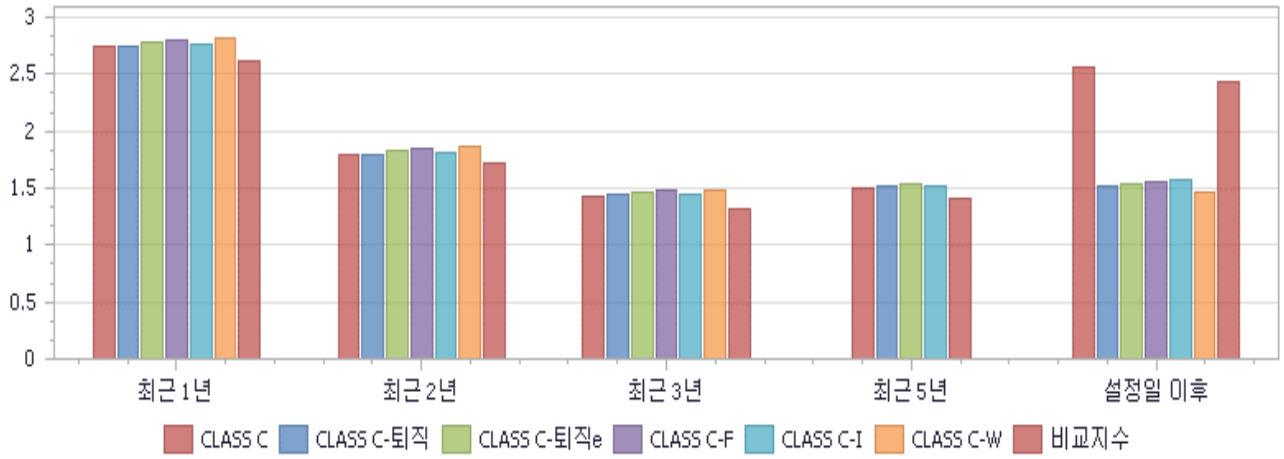
종류(클래스)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74	1.79	1.43	1.50	2.56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2.75	1.80	1.44	1.51	1.51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2.77	1.83	1.47	1.54	1.54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2.80	1.85	1.49	-	1.55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2.76	1.81	1.45	1.52	1.57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2.81	1.86	1.49	-	1.46
비교지수		2.62	1.71	1.32	1.41	2.43
수익률 변동성		0.12	0.16	0.15	0.12	0.17

※ 비교지수: KBAM유동지수(콜론)*100%

※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 각 클래스별 설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각 클래스별 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일에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클래스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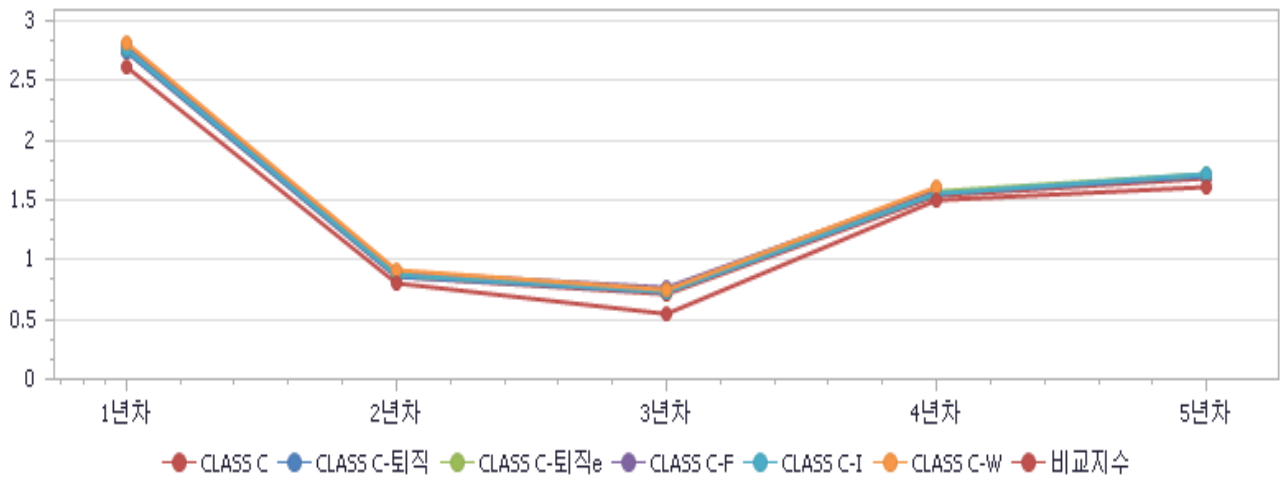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준일: 2023년 03월 29일, 단위: %)

종류(클래스)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74	0.85	0.72	1.54	1.69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2.75	0.86	0.73	1.55	1.70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2.77	0.89	0.75	1.57	1.73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2.80	0.90	0.77	1.59	-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2.76	0.87	0.74	1.56	1.71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2.81	0.92	0.75	1.60	-
비교지수		2.62	0.81	0.55	1.49	1.61

※ 비교지수: KBAM유동지수(콜론)*100%

※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기준일에 설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클래스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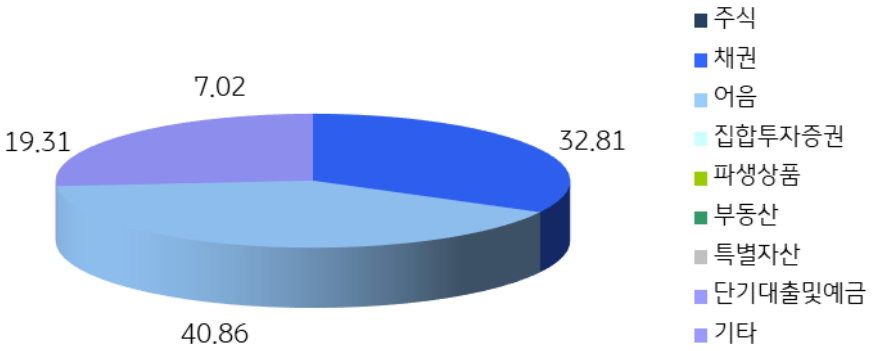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단위: 억원, %, 기준일: 2023년 03월 29일)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	22,786	28,377	0	0	0	0	0	0	13,411	4,879	69,453
	(0.00)	(32.81)	(40.86)	(0.00)	(0.00)	(0.00)	(0.00)	(0.00)	(0.00)	(19.31)	(7.02)	(100.00)
KRW	0	22,786	28,377	0	0	0	0	0	0	13,411	4,879	69,453
	(0.00)	(32.81)	(40.86)	(0.00)	(0.00)	(0.00)	(0.00)	(0.00)	(0.00)	(19.31)	(7.0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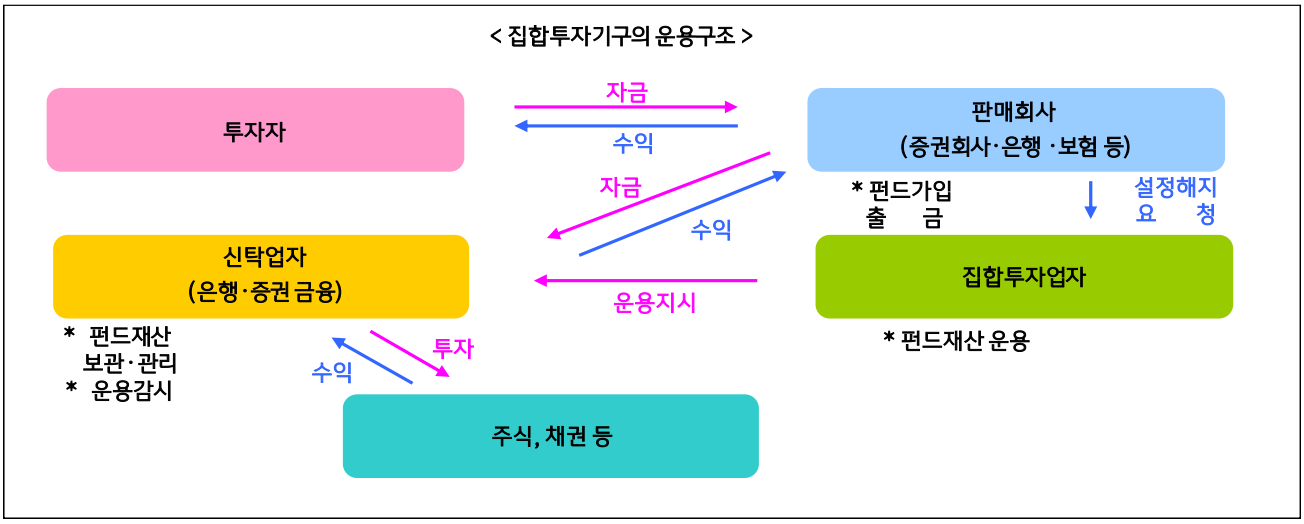
※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

※ 어음에는 CD를 포함함

※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함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B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2167-8200
주요 연혁	1988.04.28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주은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에서 'KB자산운용㈜'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국민은행 → ㈜KB금융지주)
자본금	38,337,750,000원
주요주주	㈜KB금융지주 100%
투자신탁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국민은행(계열회사)

나. 주요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4)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 및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35기	제34기
기 간	2022.12.31	2021.12.31
현금 및 예치금	43,372,720,581	24,731,965,1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55,556,797,410	263,882,958,43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0,601,648,518	31,232,442,840
관계기업투자주식	943,408,507	-
파생상품자산	2,052,742,582	92,644
대출채권	5,042,700,000	2,667,000,000
유형자산	4,429,895,732	5,886,597,143
기타금융자산	32,171,219,879	37,876,816,124
이연법인세자산	7,642,010,726	3,180,592,536
기타자산	7,674,598,715	6,280,645,012
자산총계	**369,487,743,650**	**375,739,109,848**
예수부채	1,421,034,503	1,553,477,688
파생상품부채	81,221,694	297,257,099
기타금융부채	63,797,811,320	88,079,518,208
충당부채	742,612,802	742,612,802
순확정급여부채	343,862,083	343,807,433
기타부채	36,583,887,622	37,572,098,495
부채총계	**102,970,430,024**	**128,588,771,725**
지배기업주주지분	266,517,313,626	247,150,338,123
자본금	38,337,750,000	38,337,750,000
자본잉여금	245,566,038	245,566,0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82,039,856	-604,350,341
이익잉여금	228,516,037,444	209,171,372,426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266,517,313,626**	**247,150,338,123**
부채와 자본총계	**369,487,743,650**	**375,739,109,848**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35기	제34기
기 간	2022.01.01~2022.12.31	2021.01.01~2021.12.31
영업수익	233,292,677,241	254,161,757,236
영업비용	149,539,550,953	146,225,405,575
영업이익	83,753,126,288	107,936,351,661
영업외수익	401,340,216	527,210,305
영업외비용	1,870,655,241	880,8558,11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2,283,811,263	107,583,003,853
법인세비용	23,939,146,245	27,684,116,307
당기순이익	59,344,665,018	79,898,887,546
기타포괄이익	22,310,485	-827,635,738
총포괄이익	59,366,975,503	79,071,251,808

라. 운용자산 규모

(2023년 09월 18일 현재, 단위: 억좌)

투자신탁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재간접형					
수탁고	84,258	17,050	117,873	21,444	42,235	52,136	158,225	19,607	145,237	658,06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 대경빌딩
전화번호	☎ 1599-8000/1577-8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com

나. 주요 업무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1)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KB국민은행 신관 4층
전화번호	☎ 1588-9999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나. 주요 업무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전화번호	☎ 02-3215-1450	☎ 02-399-3350	☎ 02-398-3900	☎ 02-721-5300
인터넷 홈페이지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5)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1)~4) 내용 중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은 “발행된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봅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1]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해당 주체[1]: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2)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매일경제신문(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경향신문 포함)에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3)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투자신탁을 설정 또는 설립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4)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라)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나)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펀드명	성명(상호)	관 계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운용)	KB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채권	1,252,806
	KB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현금성자산	159,976
	KB증권	자판	위탁거래	채권	6,264,031
	KB증권	자판	위탁거래	현금성자산	799,882

나.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 내부통제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한 경우]

1)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 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 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 주식 매도자금 및 일반 투자신탁 환매자금이 MMF 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약정(또는 예약)되어 있는 경우 MMF에 납입된 자금은 당일 설정 가능
- 주식 매수자금 및 일반펀드 매입자금이 MMF 계좌로부터 자동 출금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제일에 MMF 당일 환매 가능

※ 약정(또는 예약): 결제일 전일 오후 5시 이전에 약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2)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오후 5시 이전에 배치작업(자동이체)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일 설정 및 환매 가능(각 판매회사별로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 투자신탁의 매도와 관련하여 MMF 계좌의 입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당일 매입 가능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 투자신탁의 매수와 관련하여 MMF 계좌의 출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출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환매 가능
- CMA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익일 자동상환(CMA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사전약정거래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전약정에 의한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대출상환일에 MMF 당일환매 가능
- 공모주 등의 청약·환불 자금과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MMF 계좌의 입·출금 약정이 있는 경우

주) 위의 1)과 2)에 해당하는 업무는 판매회사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3) 판매회사가 고유자금으로 일정한도(MMF별 판매규모의 5%와 100억 중 큰 금액) 내에서 MMF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하여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일 매입·환매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증권의 운용비율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집합투자재산을 주로 단기성 자산(콜론, CP, CD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집합투자재산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